

1.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 | | | |
|----------|------------|------|-----------|
| 제정 | 1972. 3. 9 | 대통령령 | 제 6106 호 |
| 제 1 차개정 | 1974. 7.29 | 대통령령 | 제 7214 호 |
| 제 2 차개정 | 1977.10. 6 | 대통령령 | 제 8717 호 |
| 제 3 차개정 | 1978. 4.19 | 대통령령 | 제 8957 호 |
| 제 4 차개정 | 1979. 2.10 | 대통령령 | 제 9319 호 |
| 제 5 차개정 | 1980. 3.31 | 대통령령 | 제 9827 호 |
| 제 6 차개정 | 1981. 2.28 | 대통령령 | 제 10216 호 |
| 제 7 차개정 | 1982. 2.15 | 대통령령 | 제 10727 호 |
| 제 8 차개정 | 1982.12.31 | 대통령령 | 제 10984 호 |
| 제 9 차개정 | 1984. 5. 7 | 대통령령 | 제 11421 호 |
| 제 10 차개정 | 1986. 6.26 | 대통령령 | 제 11935 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 128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방송통신대학의 설치·조직·교육과정·교육방법·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문교부장관의 관할하에 국립학교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이하 “통신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제 3 조 (삭제)

제 4 조 (삭제)

제 5 조 (학과 및 학생정원) ①통신대학에 두는 학과 및 학과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위탁생에 대하여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 (공무원의 정원) 통신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학장 및 학과장) ①통신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통신대학을 대표한다.

③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겸보한다.

제 8 조 (하부조직) ①통신대학에 교무처·학생처 및 사무처를 둔다.

②교무처장 및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9 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 및 수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입학 및 학생정원 관리
3. 교육과정편성 및 교재편찬
4. 교원의 인사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5. 방송강의계획의 수립 및 운영
6. 방송통신교육 매체의 제작 및 녹음·녹화실 관리
7. 기타 교무처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출석수업 및 과제물 지도
2. 수강신청 및 성적관리
3. 졸업학력평가시험의 관리
4. 협력학교와의 협조

제 10 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 및 학적과를 두되, 학생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학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학생의 상벌 및 장학
3. 지역학습관 업무의 총괄
4. 기타 학생처내의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휴학·복학·제적·수료 및 졸업
2. 학적관리 및 학력증명 발급
3. 학사에 관한 상담

제 11 조 (사무처) ①사무처에 총무과 및 경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2. 법령 및 예규의 관리
3. 기획 및 예산
4.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심사분석
5. 비상계획 및 민방위
6. 인사관리 (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7. 기타 교무처 및 학생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결산 및 회계
2. 물품 및 재산의 관리
3. 시설 (내부설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설계·공사 및 공사감독
4. 시설 및 설비물의 영선과 이에 부대되는 사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 ①통신대학의 운영에 관한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신대학에 방송통신대학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13 조 (협력학교) ①통신대학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협력학교를 둔다.

②협력학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한다.

③협력학교는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이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통신대학의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 (입학자격) 통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1 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15 조 (수업방법) 통신대학의 학생은 교재와 방송강의에 의하여 학습하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협력학교에 출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교과목의 방송강의는 방송 강의 내용을 수록한 음반등의 제공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한 협력학교 출석수업은 방송강의 또는 방송강의 내용을 수록한 음반등의 제공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6 조 (교육과정) 통신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 (이수학점) 통신대학의 졸업기준 학점은 학사과정은 140 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과정은 80 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성적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적은 필답고사와 과제제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필답고사는 원칙적으로 학기말 출석수업중에 실시한다.

제 19 조 (졸업 및 학위) ① 통신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4년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 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통신대학에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③학사학위의 수여 및 등록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 124 조 및 제 12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중 개정령(1982. 12.31 대통령령 제 10984) 부칙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20 조 (부속시설) ①통신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방송통신교육연구소
2. 도서관
3. 전자계산소
4. 지역학습관

②지역학습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각각 두되, 그 설치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지역학습관의 장은 소재지 협력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④부속시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편입학) 통신대학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 22 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통신대학의 교육을 위한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장은 당해 직장에 재직중인 통신대학 학생의 협력학교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강사료) 통신대학의 수업에 출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납입금) ①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 학장은 제 1 항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에 실험·실습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5 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 26 조 (학력인정) 통신대학 학사과정에서 2년 6월 (5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0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교육법 제 128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부 칙 (1972. 3. 9 대통령령 제 6106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7. 29 대통령령 제 7214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의 규정은 197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7. 10. 6 대통령령 제 871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4.19 대통령령 제 895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197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2.10 대통령령 제 9319 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7 조의 규정은 1979 학년도에 입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3.31 대통령령 제 9827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28 대통령령 제 10216 호)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5 대통령령 제 10727 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의 직에 겸

보된 교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의 직에 겸임된 것으로 본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통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영에 의한 통신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12.31 대통령령 제 10984 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1982 학년도에 3 학년에 편입한 자의 졸업기준 학점은 제 14 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50 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1984. 5. 7 대통령령 제 11421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26 대통령령 제 11935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